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9호
- 나. 발 의 자 : 성백진 의원외 11명
- 다. 발의일자 : 2014년 11월 20일
- 라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5일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 장관”으로 하고 “고취”를 “높이다”로 하며 “설치하고자 할”을 “설치하려는”로 함. 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규:

○ 예산조치:

3. 검토의견

가. 제안 배경 및 개요

-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세부사항별 검토결과

1) 자구수정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2항, 제5조)

- 안 제2조제2호중 “고취함으로써”를 “높임으로써”로 변경하였으며, 안 제3조제2항중 “고취하고”를 “높이고”로, 안 제5조는 “설치하고자 할”을 “설치하려는”으로 각각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이는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한 것임.

2)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(안 제4조제1항)

- 안 제4조제1항은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 장관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이는 정부조직법 제26조(행정각부)에 따라, “보건복지가족부”가 “보건복지부”로 조직 명칭이 변경함에 따른 것임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고, 정부조직법 제26조(행정각부)에 따라, 조직 명칭을 변경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.